

감사위원회 시의회 보고

— 2016년 1분기 공익제보 신고·접수 현황

2016. 4. 28.

감 사 위 원 회

2016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의거한
2016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 드림

1 개 요

☐ 관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*그간 시의회에 매 분기별 공문시행 정기보고

☐ 보고 대상

○ 기 간 : 2016. 1. 1. ~ 3. 31.(1분기)

○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 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*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차로 공익제보 해당 여부와 기관별 소관업무를 파악하여
제보 성격에 맞게 분류 분배

☐ 접수 결과

○ 2016년 1분기 총 108건 접수

[표 1] 2016년 1분기 창구별 월별 접수현황

(단위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월	2월	3월
공 익 신 고	26	8	8	10
공 직 자 비 리 신 고	81	15	27	39
부정청탁 시민신고	1	1	-	-
합 계	108	24	35	49

*전년 동 기간 (2015년 1분기) 접수 111건

2

발생기관 및 제보자 유형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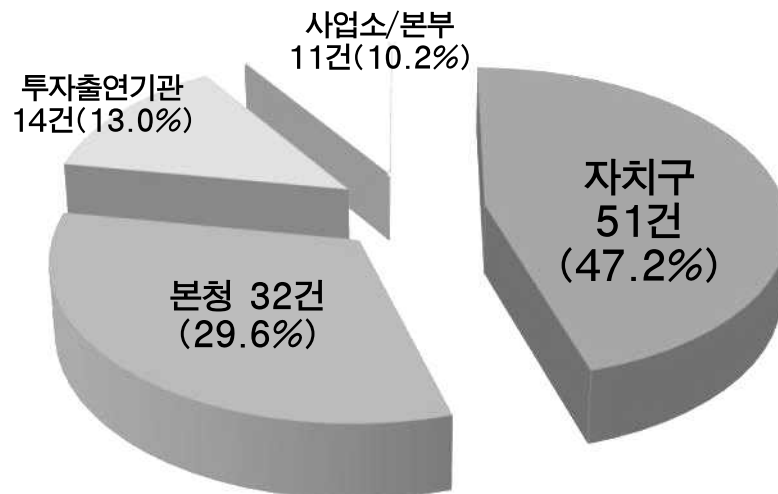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(단위 건)

제보 방법	합 계	온 라 인 “원순씨 핫라인”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우편/방문 (팩스)
접수 건수	108	97	6	5

*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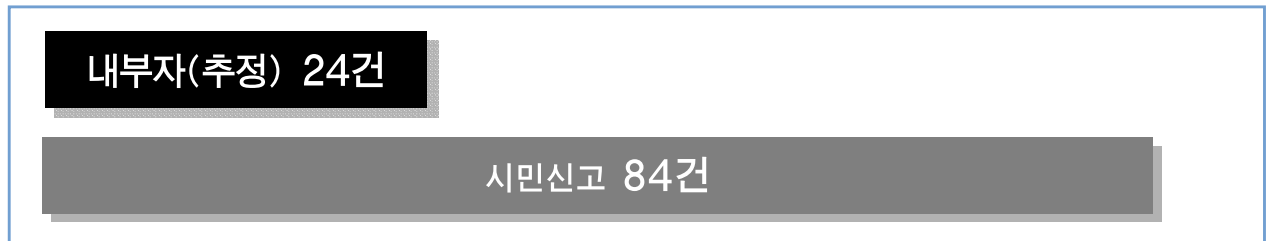
□ 제보 발생기관 분석



- 자치구의 자치/위임사무 관련 제보가 51건(47.2%)으로 가장 많았음
 - － 건축법/주택법 위반(4건), 노점상 신고(2건) 등 민생 관련 신고가 12건임
 - － 구가 관리/감독하는 보조금 기관 관련 신고는 15건. 이 중 14건은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불친절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일한 집단제보
- 본청 관련 제보는 32건(전체 대비 29.6%)
 - *32건 중 15건은 동일인의 반복민원
 - － 본청 공무원의 복무 관련 제보의 경우는 5건임
 - － 본청의 위탁·계약 기업/기관의 부당행위 의심 관련 문제제기 4건이었음
- 투자출연기관 14건, 사업소/본부 11건 순임
 - － 메트로/도시철도공사가 6건, SH공사가 5건, 소방방재본부 4건 순이었음

□ 제보자 유형 분석

- 총 108건 중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상 내부신고자 해당 추정 제보가 24건(22.2%)
- 시민신고 등 외부 제보는 84건이었음



○ 내부신고자 세부 현황

[표 3] 내부신고자 유형분석 결과

(단위 건) *중복포함

내부자 유형	총계	공무원 (중복포함)	투자출연/위탁/ 계약업체 직원 등	관리감독을 받는 자 (입주민/회원 등)
건 수	24	6	11	7

※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상 “내부 공익신고자” 정의 해당규정

- 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(법 제2호 제8호)
- ②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(시행령 제3조의2)
- ③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(시행령 제3조의2)
-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,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(시행령 제3조의2)
 - 피신고자인 기업, 법인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, 법인
 - 피신고자인 기업, 법인과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·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, 법인
- ⑤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과 공사·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(법 제2호 제8호)
- ⑥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·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(시행령 제3조의2)

3

제보 내용 분석

□ 제보내용 유형 분석

○ 접수 제보 108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해당 84건

[표 4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: 건)

총계	부패신고 (행동강령위반 포함)	공익신고	일반민원/기타
108 (100%)	49 (45.4%)	35 (32.4%)	24 (22.2%)

○ 청원/제안/건의하는 일반민원의 경우, 공익제보로 보기는 힘들지만 “원순씨 핫라인”의 성격상 공익제보에 준해 접수하여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 상 ‘공익제보’에 해당하는 신고 요건은

- 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부패방지법)상의 ‘부패신고’
- ②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‘공익신고’, ③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위반 신고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79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도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○ 부패신고 49건의 세부 내용 분석

[표 5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분류

(단위 건)

구분	구분	건수	내용
금품수수	자치구	2	금품수수 관련
	소계	2	
불공정계약 및 정책추진	본청	4	입찰이나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
	사업소 / 본부	2	
	투자출연	4	
	자치구	2	
	소계	12	
복무관련	본청	3	초과근무/허위출장/근무지이탈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
	사업소 / 본부	1	
	자치구	3	
	소계	7	
인사관련	투자출연	1	기관의 부적정 인사 문제제기
	소계	1	
업무부적정	본청	2	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미숙이나 부주의, 또는 고의로서 발생한 사건 제보
	사업소 / 본부	3	
	투자출연	3	
	자치구	8	
	계약업체	7	
	소계	23	
불친절	자치구	4	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적절 행위 등
	소계	4	
총계		49	

※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35건의 세부 내용 분석

[표 6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	분	건수	소 관 기 관	내용
건	설 산 업 기 본 법	1	사 업 소	공사현장 보행자통로 안전대책
건	축 법	3	자 치 구	조망권 침해1, 부실공사1
공	인 중 개 사 법	3	자 치 구	공인중개사 부당행위
도	로 교 통 법	2	자 치 구	주차단속1, 노점단속 1
도	로 법	1	사 업 소	도로관리 부실 1
보	험 업 법	2	본 부	보험사 계약 관련 문제제기
아	동 복 지 법	1	자 치 구	지역아동센터 부실운영
여	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	2	본 청	버스타кси 난폭운전
영	유 아 보 육 법	15	자 치 구	어린이집 부당운영(동일사건)
장	애 인 복 지 법	1	자 치 구	장애인업체 부당운영
주	택 법	3	자 치 구 / 투 자 기 관	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문제 등
체	육 시 설 설 치 운 영 법	1	자 치 구	헬스클럽 부당운영
총	계	35		

※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4

처리 현황

□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84건 처리 내역 (일반민원 미포함)

〔표 7〕 공익제보 처리 현황 (4.17 현재)

(단위 건)

처리 내용	계	조치 5		시정 16	1차 종결 18				조사 중	취하
		신분상 조치	행정 조치	시 정 조 치 (개선등)	증거 불충분	중복	해당 없음	권한 없음		
건수	84	1	4	16	4	1	10	3	32	13

※ 시정조치 등 16건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음

(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)

□ 신분·행정조치 5건 처리내역

〔표 8〕 공익제보 조치현황 (4.17 현재)

(단위 건)

구분	번호	신고 내용	처분 기관	처분 내용 (예정포함)
부패 신고	1	자치구 공무원의 춘지 공여행위	자치구	징계(요구)
	2	차량 계약보험업체의 보험료 과다계상	소방 재난본부	보험사 대상 환수 (1,607,930원)
공익 신고	3	계약서를 부적정 관리한 공인중개사 처분요구	자치구	행정처분 통보 (업무정지 6개월)
	4	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원장의 부적정행위 고발	자치구	법인에 통보, 원장 재계약 중단
	5	공사자재 중고제품 사용	도시기반 시설본부	자재 반출조치

※ 공익제보 건별 구체 내역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공개 제한

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
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
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